

의안번호	제 290 호
의 결 연 월 일	2012년 3월 일 (제 307회)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광희 의원의외 6명
발의연월일	2012년 2월 23일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0
----------	-----

발의연월일 : 2012년 2월 23일
발 의 자 : 이광희, 김도경, 노광기,
김영주, 박문희, 김재종,
장병학

1. 제안이유

-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정례회의 집회일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제1차 정례회를 매년 7월 1일에 집회한다.(안 제4조제1항)
- 7월 10일 ⇒ 7월 1일
-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1월 12일에 집회한다.(안 제4조제2항)
- 11월 15일 ⇒ 11월 12일
-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안 제4조제3항)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별첨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규제관련사항 : 해당없음
- 입법예고 여부 : 해당없음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매년 7월 10일에”를 “매년 7월 1일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년 11월 15일에”를 “매년 11월 12일에”로 한다.

제4조 제3항 중 “공휴일인 때에는”을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u>7월 10일에</u>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p> <p>② 제2차 정례회는 <u>매년 11월 15일에</u> 집회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u>공휴일인 때에는</u>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p>	<p>제4조(집회일) ① ----- <u>7월 1일에</u>----- ----- ----- ----- ----- ----- ----- -----</p> <p>② ----- <u>매년 11월 12일에</u> -----</p> <p>③ ----- <u>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u> ----- -----</p>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44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5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1. 6. 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1. 일요일

2.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